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21752
결재일자	2014.12.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행정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		
협 조	예산담당				

# 통장 수당 지급관련 예산 전용 계획

2014. 12.

행 정 국  
자치행정과

# 통장수당 지급관련 예산 전용 계획

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여 부족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. 3. 26.)

## II 예산전용 사유

-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통장 기본수당 및 회의수당 참석요율을 낮게 책정하였으나 실제 참석율이 높아 예산이 부족
- 이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

## III 예산전용 내역

- 전용금액 : 금41,000,000원(금사천일백만원)
- 전용내역 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과목			예산액	전용금액		전용 후 예산
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감액	증액	
전용 전	효율적인 동행정 운영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420,731	△20,000		400,731
	동행정 발전 전략 개발 및 홍보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41,500	△21,000		20,500
전용 후	통번장활동지원	일반보상금	통장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	1,613,096		41,000	1,654,096

붙임 : 예산전용요구서 1부. 끝.